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광장) 변경 결정안 - 영종 ~ 강화간 연결도로 -

2009. 11

인천광역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광장) 변경 결정안 - 영종 ~ 강화간 연결도로 -

의안 번호 **928**

제출연월일: 2009. 11.

제 출 자: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공간 활용 증진을 위해 강화 및 옹진군의 도서지역과 영종을 연결하는 가로망을 신설하여
- 현재 구상중인 남북 협력지대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연계하고 장래 개성·해주와 인천을 벨트로 연결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시설)으로 결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<도시계획시설(도로)>

- ㅇ 노선연장
 - 대로3-532호선 : 노선신설, 연장 14,787m, 폭 29.8m

<도시계획시설(광장)>

- ㅇ 면적확대
- 광장(501호):92,700㎡→77,828㎡(중구 운서동)
 - · 구적오차 정정: 92,700→41,134m²(감 51,566m²)
 - · 면적확대 : 41,134→77,828 m² (증 36,694 m²)
- ㅇ신 설
- 광장(507호): 74,314㎡(옹진군 북도면 신도리)
- 광장(508호):15,704㎡(강화군 길상면 선두리)

3. 입안내용

ㅇ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 정일	고
신설	대로	3	532	29.8	주간선 도로	14,787	광장 501호 (중구 운서동)	광장 508호 (강화 길상면 선두리)	자동차 전용도로	옹진군 북도면		노선 신설

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광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	시설명	시설의	OI T I		면 적(㎡)		최 초	ш¬
구正	구분 표시 번호		세 분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변경	501	교투과자	교차점	중구 운서동	00.700	감) 51,556	77 000	00 10 22	
인경	301	교통광장	광장	2746-2일원	92,700	증) 36,694	77,828	99.10.23	
신설	507	교통광장	교차점	옹진군 북도면	_	증) 74,314	74,314		
선근	307	тооо	광장	신도리 산74일원		5) 74,014 	74,514		
시서	시선 500	그투과자	교차점	강화 군길상면		증) 15,704	15 704		
신설	508	교통광장	광장	선두리 1192일원	_	증) 15,704	15,704		

4. 입안사유

ㅇ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	대로 3류 532호선	■노선신설 - 연장: 14,787m	강화 및 옹진 일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로망을 신설하여 장래 남북협력지대 및
	00232	- 폭원: 29.8m	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비

○광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501	교통광장	■면적확대 - 위치 : 중구 운서동 2825일원 - 면적 : 92,700→41,134㎡(감 51,566㎡, 구적오차) 41,134→77,828㎡(증 36,694㎡, 광장확대)	입체교차로 설치 및 통행 개선을 위한 광장 확대 및 구적오차 면적 정정
507	교통광장	■광장신설 - 위치 :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 74일원 - 면적 : 74,314㎡	입체교차로 설치 및 통행 개선을 위한 광장신설
508	교통광장	■광장신설 - 위치 :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192일원 - 면적 : 15,704㎡	입체교차로 설치 및 통행 개선을 위한 광장신설

5. 추진경위

- 2006. 5. : 2020인천도시기본계획(영종~개성 노선 제시)
- 2006. 6. :인천 교통정비증기계획(영종~개성 노선 제시)
- 2008.10.25: 영종~강화 철산리 도로 기본조사(노선대 선정)
- 2009. 6.17: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(인천도시개발공사)
- 2009. 9. 8: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(도개공→시)
- 2009. 9.18: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
- 2009.10.27:관계부서 협의
- 2009.10.29:주민공람 실시

6. 주민 의견청취 결과

- ㅇ 청취기간 : 2009. 10. 29. ~ 11. 11.(14일간)
- ㅇ 청취방법: 일간신문 공고(서울신문,우리일보),시보게재,게시판 공고
- ㅇ 청취결과 : 추후 별도 첨부
- 7.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: 추후 별도 첨부
- 8. 관련부서(기관) 의견 : 추후 별도 첨부

9. 관련법 검토내용

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구 분	주 요 내 용
법 제2조 (정의)	 "도시관리계획"이라 함은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개발·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경관·안전·산업·정보통신·보건·후생·안보·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다. 다.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
	6. "기반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가.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법 제28조 (주민과 지 방의회의	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
의견청취)	◦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법 제30조 (도시관리 계획의 결정)	 시·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시·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0. 주변여건 검토내용

- ㅇ 지역내 대형개발사업 구상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시급한 실정임
 - 총 3개 지구 : 180.2km²
 - ㅇ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(강화 북단)
 - 위 치 : 강화군 북단일원(하점지구)
 - 면 적 : 62.4km²(인구 120,000명)
 -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(강화 남단)
 - 위 치 : 강화군 남단일원(화도지구)
 - 면 적 : 94.5km²(인구 180,000명)
 -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(옹진)
 - 위 치 : 옹진군 북도면일원(신도지구)
 - 면 적 : 23.3km²(인구 20,000명)

ㅇ 첨부도면

- 1. 위치도 (별첨1)
- 2. 노선 현황도(별첨2)
- 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(별첨3)
- 4. 주변 개발사업 현황도 (별첨4)

< 별첨 1>

위 치 도



< 별첨 2>

노 선 현 황 도



< 별첨 3>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< 별첨 4>

주변 개발사업 현황도

